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69주년 제헌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계획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부는 다가오는 제69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을 경축하고, 태극기를 통한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 이에 각 기관은 붙임 계획서를 참고하여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에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69주년 제헌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계획 1부

2. 참고 이미지 파일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민안전처장관,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세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통계청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병무청장, 방위사업청장, 농촌진흥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중소기업청장, 특허청장, 기상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새만금개발청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서울특별시시장, 부산광역시시장, 대구광역시시장, 인천광역시시장, 광주광역시시장, 강원도지사, 대전광역시시장, 충청북도지사, 울산광역시시장, 충청남도지사, 경기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서울특별시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감, 광주광역시교육감, 대전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강원도교육감, 충청북도교육감, 충청남도교육감,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 경상북도교육감, 경상남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국회사무총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법원행정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의정담당관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2254 (2017.07.03.) 접수 자치행정과-@N (2017.7.3.)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http://www.moi.go.kr
전화 02-2100-3077 /전송 02-2100-3019 / sjh76@moi.go.kr / 공개

- 제 69주년 제헌절 -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계획

2017. 7.



행 정 자 치 부
(의정담당관실)

제69주년 제헌절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추진계획

I 목 적

- 제 69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을 경축하고,
- 태극기를 통하여 국민 단결을 도모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자 전국적인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함

II 국기 게양 장소 : 관공서, 각 가정, 건물, 주요 가로변 등

III 국기 게양 시간

- 매일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 평소대로 24시간 게양
 -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 게양대 ⇒ 평소대로 낮에만 게양
- 국경일 등 당일에만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7. 17.(월), 07:00 ~ 18:00까지 게양하되,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게양 가능
- 지자체별 주요 가로변 가로기 게양
⇒ 전일(7.16)부터 당일(7.17)까지 게양하되, 국기선양을 목적으로 일정구간을 정하여 연중 게양 가능

※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조절하여 설치

악천후(심한 눈·비·바람 등)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함

IV 각 기관 공통 추진사항

□ 제69주년 제헌절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7.7~7.17)

○ 각 가정에 대한 태극기 달기 홍보

-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소속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 대상 홍보
- (자치단체) 아파트 구내방송, 자치단체 소식지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 실시

※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방송할 때에는 늦은 저녁시간 방송 등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각 기관 홈페이지와 행자부 태극기 달기 안내 사이트 간 링크 협조

- 행정자치부 태극기 달기 안내 사이트 주소 : <http://moi.go.kr/html/taegeukgi>
- 배너 파일은 각 기관 홈페이지 사정 등에 따라 수정(문구 축소 등) 가능

□ 게양된 국기에 대한 관리 철저

○ 태극기 깃면은 수시로 점검하여 오염·훼손된 경우 즉시 교체

○ 국기 게양대(깃봉 포함)는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변·퇴색된 경우 지체 없이 보수·교체 조치

○ 가로기의 경우 깃대가 부러지거나 깃면이 오염·훼손되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 점검 및 즉각적인 조치 실시

※ 특히, 국내외 행사에서 훼손된 태극기 게양으로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주요 행사장, 관광지, 경기장 등의 태극기 게양실태 확인 필요

□ 국기 게양할 때 안전사고 예방

○ 자녀와 함께 국기 게양을 할 때 안전사고 발생 주의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 등

◇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 시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게양함

⇒ 소속기관, 산하기관·단체 등 일선기관에 신속히 안내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 오는 7월 17일은 제 69주년 제헌절입니다.

-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 각 가정에서는 7.17.(월), 07:00부터 18:00까지 태극기를 달도록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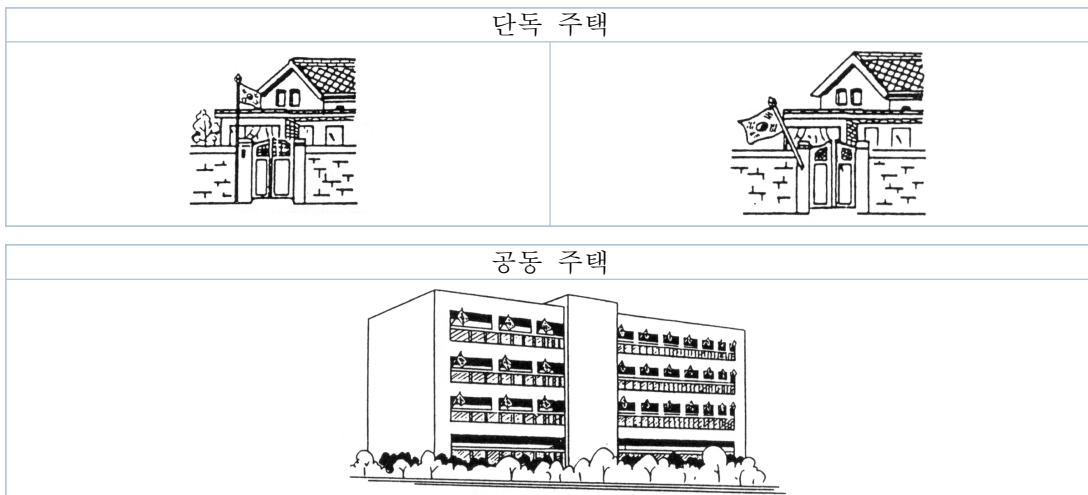
※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게양 가능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합니다.

《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 》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태극기 게양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람



《 태극기의 구입 》

△ 각급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